

『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2011. 7. 14. 공포, 2011. 10. 15. 시행)됨에 따라
-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(안 제3조)
 - 시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제출
 - 제외대상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,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비용추계의 방법(안 제4조)
 - 재정수반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달방안 등 기재
 -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

-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표시
-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 추계

○ 비용추계의 기간(안 제5조)

-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(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 연장 가능)

○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
-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
- 조례안은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 첨부
- 주민청구조례안도 시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

4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난 2011년 7월 15일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신설된 제66조의3 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” 조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

○ 주요 내용은

-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안건 제출시 비용추계서의 첨부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 66조의 3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,

- 비용추계서의 제외대상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외하였음.
-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으며, 재원조달 방안 작성과 비용추계서의 검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의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사항을 입법화하여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작성내용 및 방법, 재원조달 방안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